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63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차규근 · 박은정 · 신장식
황운하 · 김선민 · 윤종오
정춘생 · 백선희 · 용혜인
강경숙 의원(10인)

제안이유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의 청약저축 가입,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통하여 조성되고, 2024년 결산 기준 총자산 228.2조원으로 기금의 규모가 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공적 재원임. 주택도시기금이 국민 주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구조가 마련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음.

주택도시기금 정책 결정 및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지표의 공개가 필요하나 공개되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며, 주택도시기금의 실무적 운영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 및 그 성과의 외부 공시 및 성과 평가가 부재한 상황임. 이는 현행법에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공시를 통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고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0조의2).
- 나.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 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에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에 분야별 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 라.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주택도시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중 출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8까지).
- 마.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간보고서를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는 기

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여야 하며, 성과지표의 구체적 내용과 측정방법은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9 및 제10조의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5.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변경
6.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7. 위탁수수료 지급기준의 수립 및 변경
8.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9. 여유자금운용 전담기관 선정기준의 수립 및 변경
10.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11. 기금의 주요 조달 및 대출상품 금리 결정, 변경

12. 「주택도시기금 위험관리지침」 제정 및 개정

1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체적인 위원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재정경제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행정
안전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주택도시보
증공사 사장

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
의 대표자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
청장 협의체의 대표자

2. 위촉위원: 주거복지·도시 분야 및 주택금융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장(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위촉한 사람은 제외하
다)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⑩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및 사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기금의 목적 및 용처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7.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교통부 차관, 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당연직 위원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 부처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2. 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각각 지명하는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3급 이상 지방공무원 2명

3. 주거복지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주거복지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도시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도시 분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5. 주택도시기금 제도와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경제학·경영학·도시공학·도시계획학·건축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사회복지학·경제학·경영학·도시공학·도시계획학·건축학 또는 부동산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

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택도시기금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이하 “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라 한다)
2. 주택도시기금여유자금운용·위험관리전문위원회(이하 “여유자금운용·위험관리전문위원회”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재정 운영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장기재정 운영 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재정 운영 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여유자금운용·위험관리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분석 사항

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여유자금운용·위험관리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여유자금운용·위험관리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위원회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주택도시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주택도시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집행의 목표

2. 기금 집행의 원칙과 수단

3. 제1호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4. 제10조의10에 따른 성과지표의 수립 및 평가방법

5. 제4호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7(기금 출납) 기금의 관리·운용 중 출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8(기금 운용계획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9(국회 보고 의무) 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보고서를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운용의 세부 성과 및 결과 분석
2. 주요 사업별 성과 및 국민 주거안정 기여도
3. 재무적 운용의 적절성 평가
4. 기금 운용의 지속가능성 분석
5. 차년도 운용계획 및 중장기 전망
6. 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의 활동 결과

②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연간보고서를 심의하고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금 운용 개선 권고
2.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요구
3. 운용위원회 위원장 등의 출석 요구

③ 운용위원회는 신규 사업 신설 등 대규모 기금 소요가 예상되는 정책 도입 시에는 장기적 재정영향 분석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10(성과평가 체계) ① 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여야 한다.

1. 기금대출을 통한 주거안정 성과지표
 - 가. 입주가구의 주택면적 변화
 - 나. 출퇴근 시간 변화
 - 다. 주거비 부담 변화
2. 지역별 주거수준 변화지표
 - 가. 주택도시기금의 시·도별 집행 실적
 - 나.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비중
 - 다. 기금사용에 따른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3. 기금 지원 주택의 품질 확보 지표
 - 가. 하자발생 빈도

나. 입주자 만족도

4.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기금지원 단가의 적정성

5.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② 성과지표의 구체적 내용과 측정방법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성과평가 결과는 연간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11(정보공개 및 접근성 강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 기금의 운용 성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기금 운용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0조의2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기금 운용계획은 제10조의8에 따른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u> <u>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u> <u>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u> <u>4.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u> <u>5.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변경</u> <u>6.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u> <u>7. 위탁수수료 지급기준의 수립 및 변경</u> <u>8.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u> <u>9. 여유자금운용 전담기관 선정 기준의 수립 및 변경</u> <u>10.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u>

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11. 기금의 주요 조달 및 대출
상품 금리 결정, 변경

12. 「주택도시기금 위험관리지
침」 제정 및 개정

1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
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
는 사항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구체적인 위원 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
토교통부장관과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재정경제부차관 · 기획예
산처차관 · 금융위원회 부
위원장 · 행정안전부차관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 보건
복지부차관 · 주택도시보증
공사 사장

나.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
지사 협의체의 대표자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
장 협의체의 대표자

2. 위촉위원: 주거복지·도시
분야 및 주택금융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
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위원장(위촉위원 중에서 국
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위촉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
로 한다.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
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⑥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
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
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신 설>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
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
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용위원
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
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
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⑩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
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
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
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
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신 설>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
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
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
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
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
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
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
회) ① 기금의 운용 및 사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
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주
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
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
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
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4. 기금의 목적 및 용처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7.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교통부 차관, 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당연직 위원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 부처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2. 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각각 지명하는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3급 이상 지방공무원 2명

3. 주거복지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주거복지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도시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도시 분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5. 주택도시기금 제도와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 · 경제학 · 경영학 · 도시공학 · 도시계획학 · 건축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사회복지학 · 경제학 · 경영학 · 도시공학 · 도시계획학 · 건축학 또는 부동산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

<신 설>

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택도시기금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이하 “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라 한다)

2. 주택도시기금여유자금운용·위험관리전문위원회(이하 “여유자금운용·위험관리전문위원회”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재정 운영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장기재정 운영 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재정 운영 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
하는 사항

2. 여유자금운용·위험관리전문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분석 사항

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
항

다.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
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
의 위원장, 여유자금운용
· 위험관리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여유자금운용
· 위험관리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
항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
함하여 각 위원회별로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

<신 설>

<신 설>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주택도시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주택도시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집행의 목표
2. 기금 집행의 원칙과 수단
3. 제1호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4. 제10조의10에 따른 성과지표의 수립 및 평가방법
5. 제4호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7(기금 출납) 기금의 관

<신 설>

<신 설>

리·운용 중 출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8(기금 운용계획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9(국회 보고 의무) ① 운

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보고서를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 운용의 세부 성과 및 결과 분석
2. 주요 사업별 성과 및 국민 주거안정 기여도
3. 재무적 운용의 적절성 평가

<신 설>

4. 기금 운용의 지속가능성 분석

5. 차년도 운용계획 및 중장기 전망

6. 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의 활동 결과

②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연간보고서를 심의하고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금 운용 개선 권고

2.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요구

3. 운용위원회 위원장 등의 출석 요구

③ 운용위원회는 신규 사업 신설 등 대규모 기금 소요가 예상되는 정책 도입 시에는 장기적 재정영향 분석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10(성과평가 체계) ① 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여야 한다.

1. 기금대출을 통한 주거안정

성과지표

가. 입주가구의 주택면적 변화

나. 출퇴근 시간 변화

다. 주거비 부담 변화

2. 지역별 주거수준 변화지표

가. 주택도시기금의 시·도별 집행 실적

나.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비중

다. 기금사용에 따른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3. 기금 지원 주택의 품질 확보 지표

가. 하자발생 빈도

나. 입주자 만족도

4.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기금지원 단가의 적정성

5.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② 성과지표의 구체적 내용과 측정방법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성과평가 결과는 연간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하

<u><신 설></u>	<u>여야 한다.</u> <u>제10조의11(정보공개 및 접근성 강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u> <u>택도시기금의 운용 성과를 보</u> <u>장하기 위하여 전용 정보시스</u> <u>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u> <u>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기금 운</u> <u>용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u> <u>도록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할</u> <u>수 있다.</u> <u>③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는</u>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u> <u>법률」을 준용한다.</u>
---------------------------	--